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1. 4. 26. 지침 제2호
개정 2011. 9. 14. 지침 제5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2.12.18.] [지침 제7호, 2012.12.18., 일부개정]
[시행 2015.5.11.] [지침 제13호, 2015.5.11., 일부개정]
[시행 2016.3.31.] [지침 제15호, 2016.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기능)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2.12.18.>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3. 직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심의
4. 「내규공개관리기준」에 따른 내규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반부패실무회의(「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에서 상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윤리경영 업무 담당 부서장, 내규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7명 이내, 대표 청렴지킴이가 된다. <개정 2015.5.11., 2016.3.31.>

③ 제2항의 청렴옴부즈만과 대표 청렴지킴이는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2.12.18.>

③ 위원회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12.18.>

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결방법)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18.>

② 위원이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③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연속으로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2.10.31.>

④ 서면 회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윤리경영 업무 담당 부서의 윤리경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3.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2. 회의 안건 및 경과요지
3. 회의 결과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의사록은 윤리경영 업무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보존·관리한다. <개정 2012.10.31., 2016.3.31.>

제9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18.>

부칙 (제정)

이 지침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이 지침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7호, 2012.12.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13호, 2015.5.1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침 제15호, 2016.3.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